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 나.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 다.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의2 제7호)
- 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리글라이더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조종교육(무상교육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상 실제 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영 제26조제1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이 조 및 제306조의3에서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시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최초)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정기)
항공안전관계 법령 및 규정	2시간	1시간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등 기술능력	1시간	1시간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1시간	1시간
비상절차 등 조종자 안전 준수사항	4시간	1시간
계	8시간	4시간(매 2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6조의3(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1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력기준

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3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교관 2명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안전교육 운영인력 1명 이상

2. 장비 및 시설기준 등

가. 운영인력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것

나. 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육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비행장치 1대 이상 등 교육

장비 및 시설을 갖추 것

라. 평가기록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를 확보할 것

② 영 제26조제1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조직도
2. 교관 등 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
4.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서(연간 최대 교육 가능 인원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5.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성과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시행 계획서
6. 평가기록 등 관련 서류 보관 계획
7. 그 밖에 참고할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3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및 제34호”를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9호, 제32호, 제33호 및 제36호 및 제37호”로 한다.

별표 44의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4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별표 4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7호서식과 제1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7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7일
2. 제306조의2, 제306조의3 및 별표 44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7일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 지정의 효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수수료(제321조 관련)

납부자	수수료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다만, 변경신청하는 경우 다음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나. 활공기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라. 프로펠러 마.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130만원 260만원 26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만3천원을 더한 금액 46만5천원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30만원 200원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부가형식증명서 최초 발급 나. 부가형식증명서 재발급	37만원 200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한 비행기, 헬리콥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1) 단발기 (2) 다발기 다. 활공기 라.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마. 프로펠러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1만6천원을 더한 금액 65만원 130만원 23만원 33만원 65만원 130만원 15만원

바. 형식증명승인서 재발급	200원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18만원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가. 가. 항공기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130만원 65만원
6.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실험분류, 특별비행허가분류는 제외한다)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다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검사원이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에 제3호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검사수수를 더한 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1) 단발기	
2) 다발기	
(나)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2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활공기	
다. 감항증명서 재교부	
(단) 기종별 증명서 교부의 경우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개당 2천원. 다만, 부품을 묶음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묶음 당 2천원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서류검사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한다)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가. 신규로 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인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인 것 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로 서 수리·개조 등으로 재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인 것 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재교부	천원) 1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800 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 천킬로그램까지마다 1 천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5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 천킬로그램까지마다 500 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 천킬로그램까지마다 1 천원을 가산한 금액) 200원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7만원
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재발급	200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26만원
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재발급	200원
11. 법 제30조제1항 따라 수리·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가.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인 것	4만원 8만원 8만원에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량에 대하여 매 1 천킬로그램까지마다 2,000

나. 활공기	원을 가산한 금액 4만원
다.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항공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경우)	4만원
1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경 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1) 자격증명시험(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 제사, 운항관리사)	5만6천 원
(2) 한정심사(조종사, 항공정비사)	9만2천 원
나. 실기시험	
(1) 자격증명시험	
(가) 조종사, 항공정비사(구술), 항공교통관제사 (구술), 운항관리사	9만7천 원
(나) 항공정비사	12만7천 원
(다) 항공교통관제사	10만2천 원
(2) 한정심사(조종사, 항공정비사)	11만7천 원
13.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가. 전부 면제	2만원
나. 일부 면제	1만원
14.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는 자	1만원
15.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 정·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하는 자	39만2천 원
16. 법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 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 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 원
17.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12만3천 원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발급 또는 재발급	1만1천 원
18.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200원

19.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가. 지식심사 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기량심사 다. 가목의 지식심사와 나목의 기량심사를 병행하는 심사	5만2천 원 8만3천 원 13만5천 원
20.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8만원
21.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8만원
22.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78만원
23.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39만원
24.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신규 및 갱신 신청 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또는 추가를 포함한다)	78만원 39만원
25.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1. 신규 신청 2. 변경승인 신청	39만원 19만5천 원
26. 법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0만원
27.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초도검사 나. 정기검사 다. 수시 및 재검사 라. 증명서 재교부	20만원 15만원 9만원 2만원
28.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시험에 응시하는 자 가. 학과시험 나. 실기시험	5만6천 원 9만7천 원
29.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나. 실기시험	9만2천 원 11만7천 원
30.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가. 전부 면제 나. 일부 면제	2만원 1만원
31.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3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나. 실기시험	9만2천 원 11만7천 원
3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만원(온라인교육의 경우 3만5천 원)
34.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	200원
35. 법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초도검사 나. 정기검사 다. 수시 및 재검사 라. 증명서 재발급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9만원 2만원
36.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나. 실기시험 다.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4만4천 원 6만6천 원 1만원
37.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만원(온라인교육의 경우 3만5천 원)
38.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1만원
비고 1.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전문검사기관 등의 소속검사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는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술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27호부터 제32호까지, 제35호 및 제36호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36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해당 시험응시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5. 제12호 및 제16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제6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는 제12호, 제16호 및 제36호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8. 제27호 및 제35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업체명	

조직 및 인원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조직도 등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	---

교육방법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	-----------------------------------

전담 인력 현황	성명	소속 및 직위	교육관련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

교육과 관련한 주요 실적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	---------------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의3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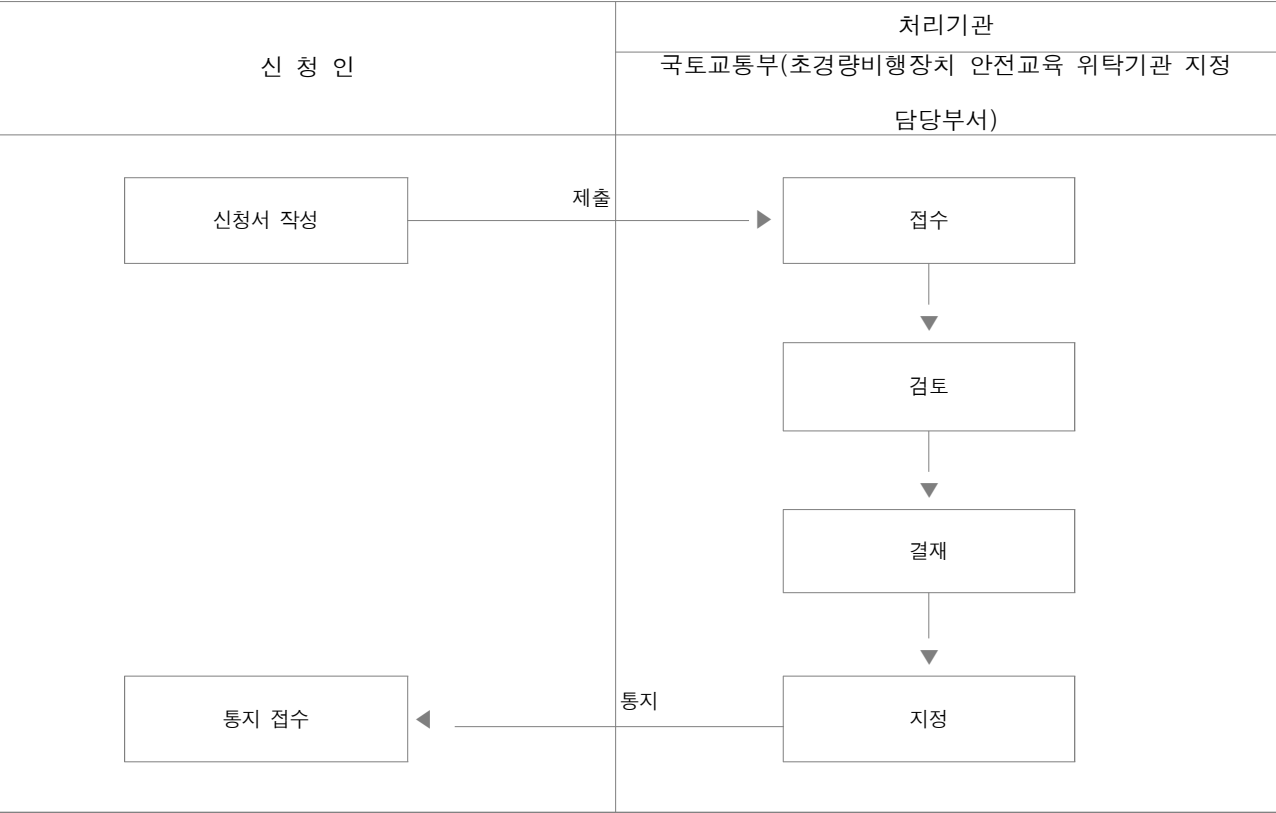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관의 조직도 2. 교관 등 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 4.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서(연간 최대 교육 가능 인원을 포함한 것이야 한다) 5.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성과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시행 계획서 6. 평가기록 등 관련 서류 보관 계획 7. 그 밖에 참고할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기관 설치자의 성명·주소	
기관의 명칭	
기관의 주소	
지정조건	

위 위탁기관을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의3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6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를 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조종교육(무상교육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상 실제 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영 제26조제1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이 조 및 제306조의3에서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u> <u>③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안전교육을 정기</u>

<신 설>

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시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최초)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정기)
항공안전관계 법령 및 규정	2시간	1시간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등 기술능력	1시간	1시간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1시간	1시간
비상절차 등 조종자 안전 준수사항	4시간	1시간
계	8시간	4시간(매 2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6조의3(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1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력기준

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300시간 이상의 비행경

력이 있는 교관 2명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
을 이수한 지도조종자가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안전교육 운영인력 1명
이상

2. 장비 및 시설기준 등

가. 운영인력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것
나. 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장
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교
육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컴퓨
터, 교육용 비행장치 1대
이상 등 교육장비 및 시설
을 갖추는 것

라. 평가기록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보안성이 확보된 저
장매체를 확보할 것

② 영 제26조제11항에 따라 초
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조직도

2. 교관 등 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

4.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서(연간 최대 교육 가능 인원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5.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성과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시행 계획서

6. 평가기록 등 관련 서류 보관 계획

7. 그 밖에 참고할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제321조(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별표 47 <u>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및 제34호</u>에 따른 시험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전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⑤ <u>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u> 제321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9호, 제32호, 제33호 및 제36호 및 제37호</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